

「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
 - 목적조문: 「고흥군 조례·규칙 공포 및 제정 폐지 청구 조례」 제6조 제3항
→ 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 제3항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(안 제2조)

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「고흥군 조례·규칙 등 공포 및 제정 개폐 청구 조례」 제6조제3항”을 “관하여 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”을 “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제3조(공포방법) 군보”를 “군보”로 하며,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고흥군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「고흥군 조례·규칙 등 공포 및 제정 개폐 청구 조례」 제6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</u> <u>고흥군의회의(이하 “의회”이라 한다) 규칙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하여 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라 함은 <u>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공포방법) <u>제3조(공포방법) 군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.</u> ① · ② (생략)</p>	<p>제3조(공포방법) ① <u>군보</u>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</p>
<p>제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「고흥군 조례·규칙 등 공포 및 제정 개폐 청구 조례」</u>를 준용한다.</p>	<p>제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</u>를 준용한다.</p>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